

#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45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8. 13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개정이유

- 거창군 현행 수도요금의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, 수용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, 생산원가에 근접토록하여 상수도 시설확충, 맑은물공급 및 수질개선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함.
- 업종별로 부과단계는 현행 누진단계를 적용하고, 누진단계별 부과금액을 새로 정함 (제26조 별표2)

## 개정근거

- '98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

##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본문중 “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”를 “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”로 한다

“별표2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- ② (요금적용)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

# 신·구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6조(요금)</p> <p>① <u>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.</u>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6조(요금)</p> <p>① <u>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.</u>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2]

## 업종별 요율표

업종별	사 용 량 (톤)	톤 당 단 가 (원)	비 고
가정용	0 ~ 10	310	
	10 초과 ~ 20	360	
	20 초과 ~ 30	410	
	30 초과 ~ 40	458	
	40 초과 ~ 50	508	
	50 초과 ~	558	
업무용	0 ~ 20	450	
	20 초과 ~ 50	510	
	50 초과 ~ 100	575	
	100 초과 ~ 300	640	
	300 초과 ~	700	
영업용	0 ~ 30	500	
	30 초과 ~ 50	575	
	50 초과 ~ 100	650	
	100 초과 ~	725	
육탕1종	0 ~ 200	440	
	200 초과 ~ 300	510	
	300 초과 ~ 500	580	
	500초과 ~	651	
육탕2종	0 ~ 200	770	
	200 초과 ~ 500	893	
	500 초과 ~ 1000	1,016	
	1000 초과 ~	1,140	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
업 종 별 요 율 표			
업종별	사 용 단 계 별		요 금 (원)
	구분	사 용 량 (톤)	
가정용	기본	0 ~ 10	1,900 (정액)
	초과	10초과 ~ 20	260 (톤당)
		20초과 ~ 30	310 (톤당)
		30초과 ~ 40	360 (톤당)
		40초과 ~ 50	430 (톤당)
		50초과 ~	510 (톤당)
	기본	0 ~ 20	4,200 (정액)
업무용	초과	20초과 ~ 50	370 (톤당)
		50초과 ~ 100	410 (톤당)
		100초과 ~ 300	450 (톤당)
		300초과 ~	560 (톤당)
		기본	0 ~ 30
영업용	초과	30초과 ~ 50	460 (톤당)
		50초과 ~ 100	540 (톤당)
		100초과 ~	630 (톤당)
		기본	0 ~ 200
옥탕1 종	초과	200초과 ~ 300	410 (톤당)
		300초과 ~ 500	430 (톤당)
		500초과 ~	580 (톤당)
		기본	0 ~ 200
옥탕2 종	초과	200초과 ~ 500	550 (톤당)
		500초과 ~ 1000	690 (톤당)
		1000초과 ~	850 (톤당)

개 정 ( 안 )		
업 종 별 요 율 표		
업종별	사 용 량 (톤)	톤당단가 (원)
가정용	0 ~ 10	310
	10초과 ~ 20	360
	20초과 ~ 30	410
	30초과 ~ 40	458
	40초과 ~ 50	508
	50초과 ~	558
	업무용	0 ~ 20
20초과 ~ 50		510
50초과 ~ 100		575
100초과 ~ 300		640
300초과 ~		700
영업용		0 ~ 30
	30초과 ~ 50	575
	50초과 ~ 100	650
	100초과 ~	725
옥탕1 종	0 ~ 200	440
	200초과 ~ 300	510
	300초과 ~ 500	580
	500초과 ~	651
옥탕2 종	0 ~ 200	770
	200초과 ~ 500	893
	500초과 ~ 1000	1016
	1000초과 ~	1140